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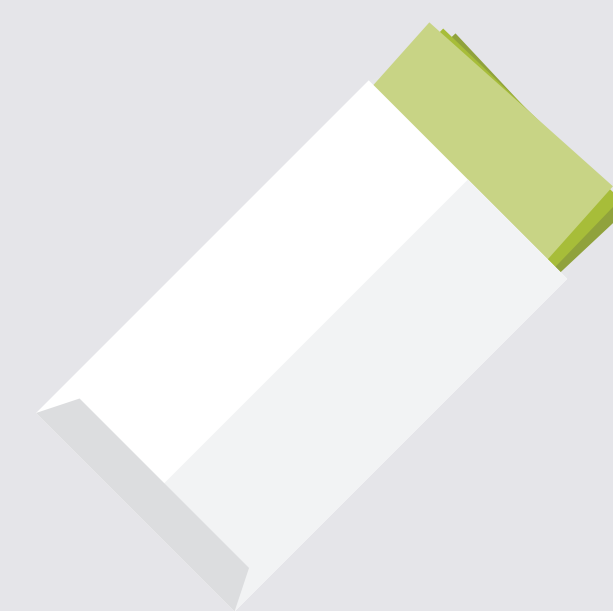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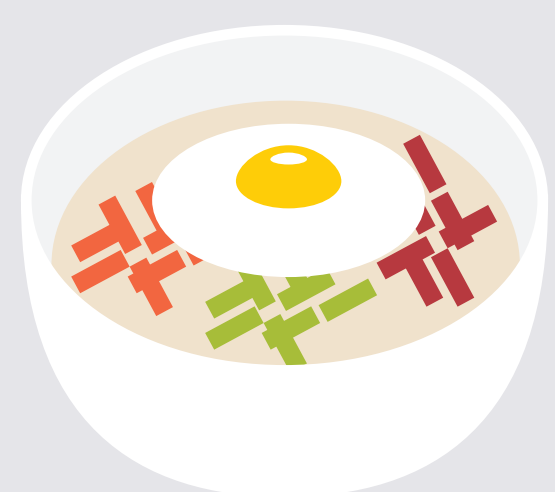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선물은 이전처럼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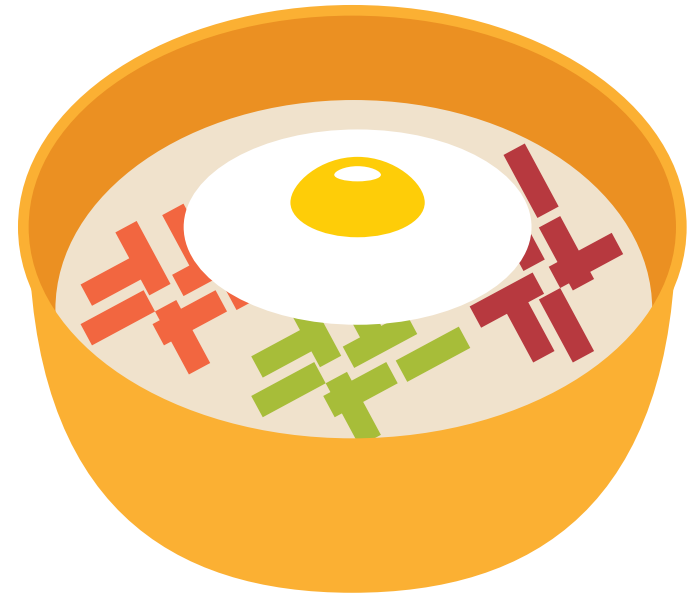
축의금·조의금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되,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음식물은 이전처럼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변경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3만원

기존과 같음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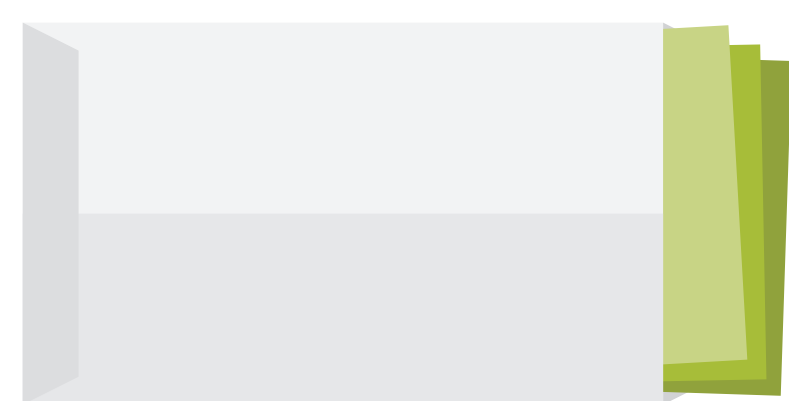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 축의금, 조의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가능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인
- 지도·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평가, 감사대상자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 제공자 | 제공 대상자 | 제공 금액 | 과태료 |
|-----------|------------|-------|-------|
| 물품생산업체 임원 |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 7만8천원 | 3배 부과 |
| 고소인 | 담당 수사관 | 4만5천원 | 2배 부과 |
| 분쟁조정 신청자 | 담당 공직자 | 3만3천원 | 3배 부과 |
| 행정심판 피청구인 | 심판담당 공직자 | 1만8백원 | 2배 부과 |
| 피의자 | 담당 수사관 | 1만원 | 2배 부과 |
| 납품업체 직원 |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 9천6백원 | 2배 부과 |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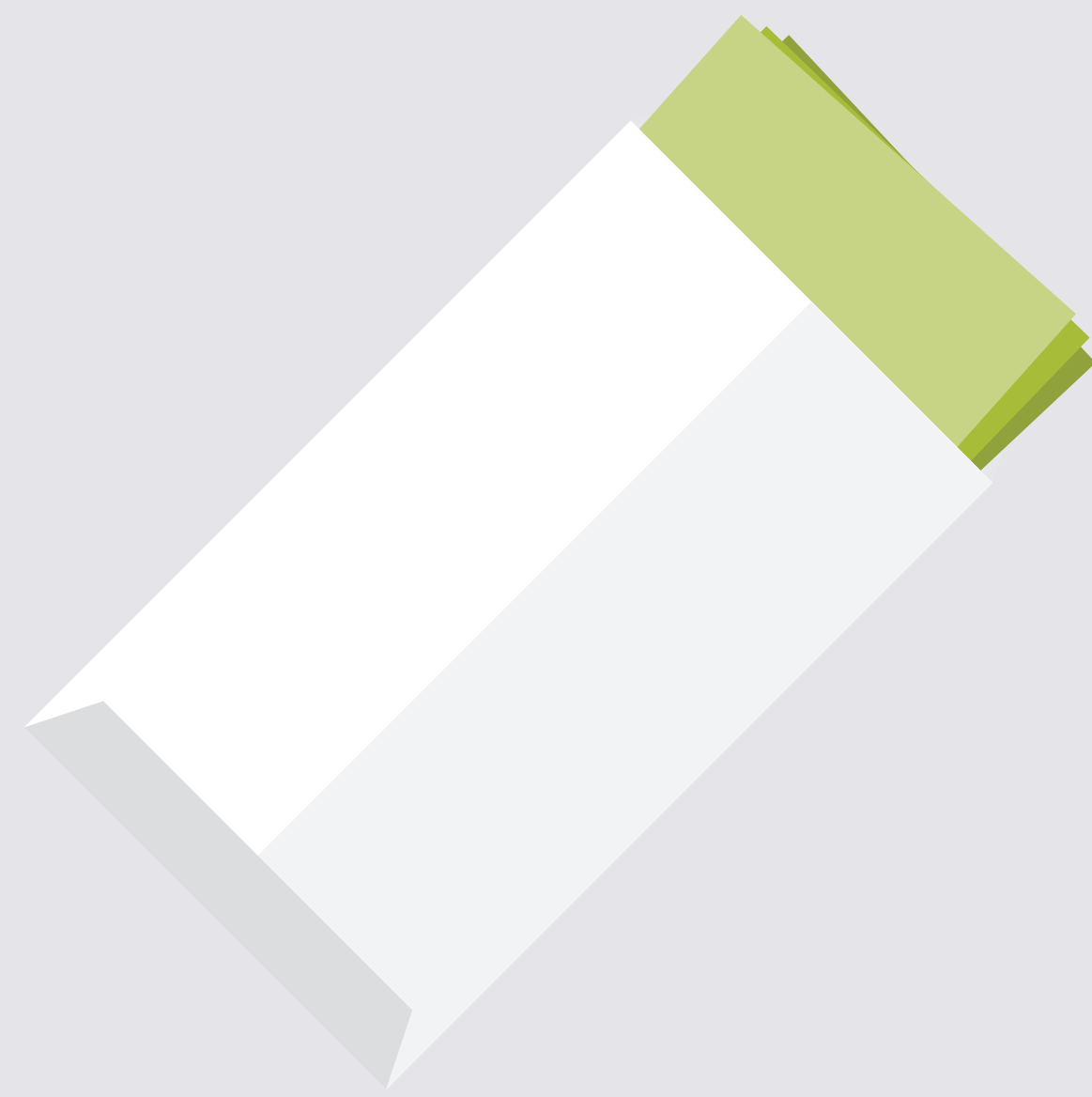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축의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부조 목적으로 5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 공직자가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을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기간이 연장됩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 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직 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같이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사전 신고를 할 때 사례금 액수를 모르면 이를 빼고 신고한 후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면 됩니다.



※ 다만, 기관별 행동강령의 사례금 상한액이 더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시간당 상한액

사례금 총액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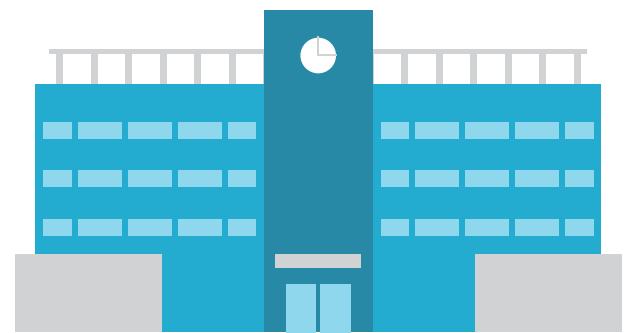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60만원

1시간 상한액의 150%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제한 없음

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상세 명세나 사례금 총액 등을 모르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 필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직자가 승진을 하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채용할 때만**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받으면 되므로
승진했을 때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